투자 위험 등급 5 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나라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우리나라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 우리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4.11.3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12.20**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우리자산운용 본점
   (☎02-2118-0500 www.wooriam.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됩니다.

14.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2024.11.30

우리나라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코드 : EA909]

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REPO전략 관련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우리나라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잔존만기 3개월 내외의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60%이상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유동성과 수익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평균 듀레이션 0.3년 내외로 유지하여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별 편입 비중 및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추가 수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납입금액의 0.30% 이내	0.2000	0.1000	0.3500	0.2000	50	72	94	142	2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4000	0.3000	0.3900	0.4000	41	84	128	224	50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2)	납입금액의 0.20% 이내	0.3000	0.2000	0.3500	0.3000	51	83	116	188	4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15% 이내	0.1500	0.0500	0.2500	0.1500	30	46	63	100	2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2500	0.1500	0.2500	0.2500	26	52	80	141	3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없음	0.3000	0.2000	-	0.3000	31	63	97	169	38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1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종류 A2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4.05.08	-	-	-	-	3.74
비교지수(%)	2024.04.22	-	-	-	-	3.57
수익률 변동성(%)	2024.04.22	-	-	-	-	0.09

주1) 비교지수 : Call * 100%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종류 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임성한	1989	책임 (차장)	-	-	-	-	6.34	5.81	5 년 3 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채권1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table>
<tr><td></td><td>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td></tr>
<tr><td>투자자
유의사항</td><td>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주요투자
위험</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금리변동위험</td><td>신탁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이자율 변동,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및 어음 등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금리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신용위험</td><td>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td></tr>
<tr><td>REPO전략 관련 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인 REPO(환매조건부매도)전략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RE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채권 등 자산에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창출 등의 운용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기간에 대한 불일치 등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순자산가치 변동위험</td><td>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r><td>매입
방법</td><td>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td><td>환매
방법</td><td>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td></tr>
</table>

<table>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2">해당사항 없음</td><td></td><td>기준가격을 적용. 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4"><table>
<tr><td>산정 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 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wooria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4"><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td></tr>
<tr><td>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 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r><td>퇴직연금제도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 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able></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우리자산운용㈜ (대표번호: 02-211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wooriam.kr)</td></tr>
<tr><td>모집기간</td><td colspan="2">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 · 매출 총액</td><td>10조 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 colspan="2">2024년 12월 20일</td><td>존속 기간</td><td>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4">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4">판매수수료</td><td>수수료 선취 (A1)</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선취 (A2)</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 (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 A2),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6 개월, 판매수수료선취형(A2)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2)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후취</td><td>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td></tr>
</table>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액, 기관 (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개인연금 (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a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am.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나라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A909)	
종류(Clas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EA910
A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EA911
A-e	수수료선취-온라인	EA912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EA913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EA914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기관	EA915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EA916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EA917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EA918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EA919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EA920
C-P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	EA921
S-P(퇴직)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EA922
C-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EA923
C-P1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EA924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EA92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종류: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해당사항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이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

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홈페이지 참고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우리나라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A909)	
종류(Class)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EA910
A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EA911
A-e	수수료선취-온라인	EA912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EA913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EA914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기관	EA915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EA916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EA917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EA918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EA919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EA920
C-P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	EA921
S-P(퇴직)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EA922
C-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EA923
C-P1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EA924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EA92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 경 사 항
2024.04.22	최초 설정
2024.06.28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4.09.20	운용전문인력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2024.12.20	운용전문인력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이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44층 02-2118-05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작성기준일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형)**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임성한	1989	차장	-	-	-	-	6.34	5.81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5 년 3 개월			2016.02 ~ 2022.04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 2022.05 ~ 2024.11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2024.11~ 현재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은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채권1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음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이새라	2024.04 ~ 2024.06
윤종현	2024.06 ~ 2024.09
김종안	2024.09 ~ 2024.12
임성한	2024.12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김종안	2024.04 ~ 2024.09

주1)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1)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6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 년 6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선취(A2)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1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 년 11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1, A2),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1)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6 개월, 판매수수료선취형(A2)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11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 년 6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1)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약 1 년 11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2)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

로		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액, 기관 (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개인연금 (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권리를 포함합니다.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 기준)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①채권	60%이상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단기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를 포함하고,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②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③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집합투자증권등	40%미만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합니다.)
⑤채권관련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합니다.
⑥증권의 대여[1]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⑦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차입[2]	20% 이하	-
⑨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⑩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⑪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⑫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① 내지 ④의 규정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②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③집합투자증권 투자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 조 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2)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 조 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를 포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매매	1)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부터 1개월간
	2)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계열회사 증권 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⑥투자제한 적용의 예외	가. 투자대상 ⑤~⑧, 나. 투자제한②~④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잔존만기 3개월 내외의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60%이상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유동성과 수익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평균 듀레이션 0.3년 내외로 유지하여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별 편입 비중 및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추가 수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 비교지수

* 비교지수: Call * 10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듀레이션 3개월 내외의 단기자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신탁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비교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2)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 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관리리스크	정의	측정 및 관리
시장 리스크 (Market Risk)	이자율, 주가, 환율, 파생상품가치 등 각종 가격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자산가치의 변동	- 베타, TE - 수정듀레이션, 금리

	을 초래할 리스크	- 가격등락률 점검 - 평가, 매매 점검 - 개별주식 시가총액 비중별 편입한도제한 모니터링 - GICS 분류 기준에 따른 섹터 비중별 투자제한한도 모니터링
신용 리스크 (Credit Risk)	채무자, 투자대상회사 또는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의 신용상태(Credit Quality) 변화나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상의 손실 리스크	- Credit Event 발생시 시장지표상시 모니터링 - 거래정지 등 수시 점검
유동성 리스크 (Liquidity Risk)	시장에서 거래부족이나 장애 등으로 유가증권 등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리스크 또는 펀드에서 환매청구가 있을 경우 펀드의 해지를 통해 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리스크	- 유동성 비율 - 설정/ 해지 체크 - 거래량 대비 보유비율 점검
운영 리스크 (Operational Risk)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외부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	- OP 정기/수시 모니터링, 감사 - 운영 리스크 체크리스트 점검 - 기준가격 점검
법적 리스크 (Legal Risk)	관련법규 및 해당 규약 기타 제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상의 손실, 고객과의 분쟁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징계 등을 초래할 리스크	사전법률검토, 계약검토, 분쟁/소송 대응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위기 모니터링 지표를 통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합니다. 회사의 AUM 하락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을 구축하고, 별도 위기관리기준을 통하여 펀드의 유동성위기(대량환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기준 초과시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대응합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의 이자수익 뿐만아니라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손익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이자율 변동,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및 어음 등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금리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기업어음 등의 신용등급은 취득시점이 기준이며,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되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용등급 이하로 떨어질 경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신용보강 기관의 의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PO전략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인 REPO(환매조건부매도)전략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RE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채권 등 자산에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창출 등의 운용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기간에 대한 불일치 등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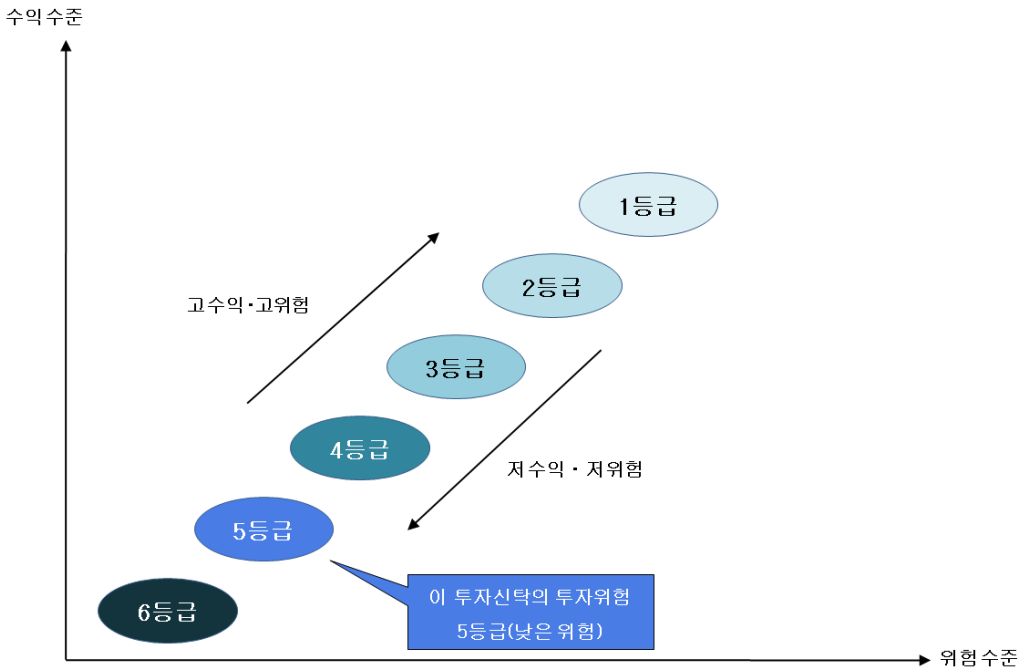
다.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작성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한 투자위험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설정 후 3 년이 경과할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될 예정이며, 이 때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6 등급 중 5 등급(낮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준의 투자위험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에서 분류한 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자산운용 자체 위험분류 기준>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구 분	수준	개 요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할 경우 한정)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을 말하며,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 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부동산, 특별자산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수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이하	20%이하	10% 이하	1%이하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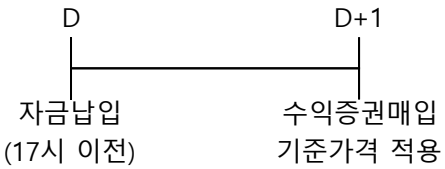
(2) 수익증권 종류별 매입자격

종류별(Class)		가 입 자 격
A1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고, 매입자격의 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A2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고, 매입자격의 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고,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기관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나.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다.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5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법인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다.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라.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온라인)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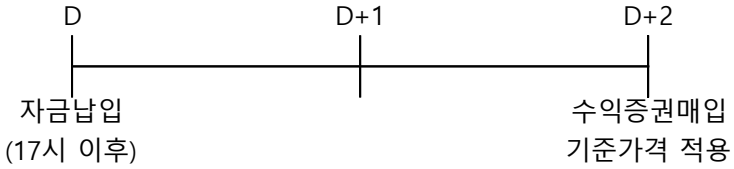
		우는 제외)
C-P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100억원 이상 매입하는 투자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S-P (퇴직)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전자매체(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시(오후5시)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17시(오후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구 분		수수료(비용)	
		발생	미발생
중도환매	허용		O
	불가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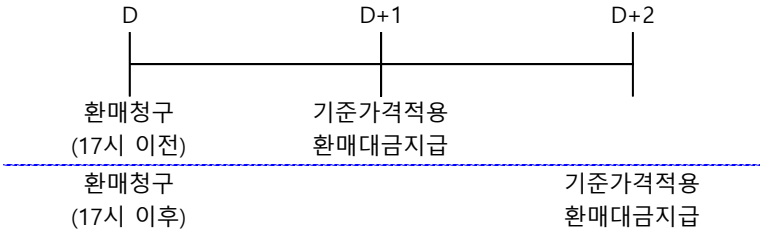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시(오후5시)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7시(오후5시)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 예시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환매 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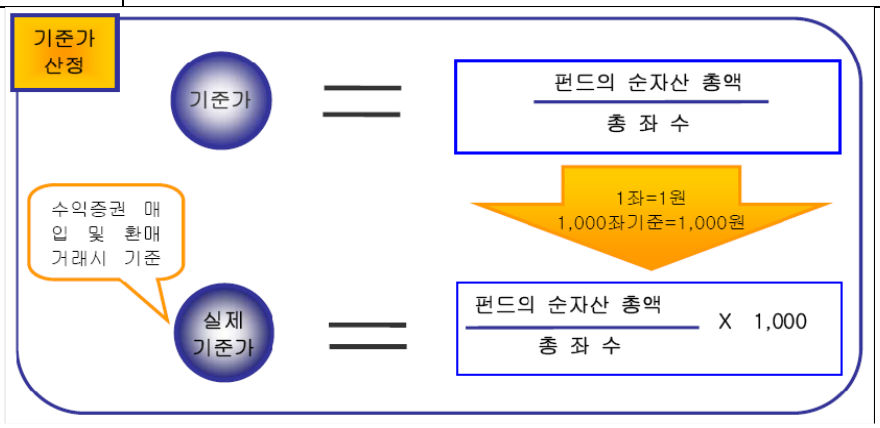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등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및 상장채권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Class)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0.30% 이내	-	-
A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0.20% 이내	-	
A-e	수수료선취-	납입금액의	-	

	온라인	0.15% 이내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	-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	-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기관	-	-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	-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	-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	-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	-	
C-Pi	수수료미징구-오프라 인-퇴직연금(고액)	-	-	
S-P(퇴직)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퇴직연금	-	-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	-	
C-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	-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각 비율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거래 비용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0750	0.1000	0.0150	0.0100	0.2000	-	0.2000	0.3500	0.2000	-
A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0750	0.2000	0.0150	0.0100	0.3000	-	0.3000	0.3500	0.3000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0750	0.0500	0.0150	0.0100	0.1500	-	0.1500	0.2500	0.1500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0750	0.3000	0.0150	0.0100	0.4000	-	0.4000	0.3900	0.4000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0750	0.1500	0.0150	0.0100	0.2500	-	0.2500	0.2500	0.2500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기관	0.0750	0.0100	0.0150	0.0100	0.1100	-	0.1100	-	0.1100	-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0.0750	0.0300	0.0150	0.0100	0.1300	-	0.1300	-	0.1300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0750	0.0000	0.0150	0.0100	0.1000	-	0.1000	-	0.1000	-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0750	0.0400	0.0150	0.0100	0.1400	-	0.1400	-	0.1400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0750	0.2000	0.0150	0.0100	0.3000	-	0.3000	-	0.3000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0750	0.1000	0.0150	0.0100	0.2000	-	0.2000	-	0.2000	-
C-P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	0.0750	0.0400	0.0150	0.0100	0.1400	-	0.1400	-	0.1400	-
S-P (퇴직)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0.0750	0.0500	0.0150	0.0100	0.1500	-	0.1500	-	0.1500	-
C-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0750	0.1400	0.0150	0.0100	0.2400	-	0.2400	-	0.2400	-

C-P1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0750	0.0700	0.0150	0.0100	0.1700	-	0.1700	-	0.1700	-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0.0750	0.0550	0.0150	0.0100	0.1550	-	0.1550	-	0.1550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주2)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된 비용을 기재합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TER: Total Expense Ratio)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종류 A1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2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예시

(단위: 천원)

종류(Class)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5년	10년
A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0	72	94	142	28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0	72	94	142	284

A2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1	83	116	188	4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1	83	116	188	400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	46	63	100	2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0	46	63	100	207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1	84	128	224	50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1	84	128	224	505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	52	80	141	3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6	52	80	141	318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기관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	23	35	62	14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	23	35	62	141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	27	42	73	16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	27	42	73	166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	21	32	56	12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	21	32	56	128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	29	45	79	17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	29	45	79	179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1	63	97	169	38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1	63	97	169	381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	42	64	113	2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	42	64	113	255
C-P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	29	45	79	17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	29	45	79	179
S-P (퇴직)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	31	48	85	1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	31	48	85	192
C-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	50	77	135	3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	50	77	135	306
C-P1e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	36	55	96	217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	36	55	96	217
S-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	33	50	87	1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	33	50	87	198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투자수익율,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한편,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적으로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최대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최대 600만원과 합산)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최대 600만원 한도)의 13.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연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15% 분리과세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 (2024.04.22 ~ 2024.10.22)	-	회계기간 미경과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1기 (2024.10.22)		
운용자산	609,758,879,576		
증권	595,154,162,042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14,604,717,534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3,929,316,422		
자산총계	613,688,195,998		
운용부채	31,800,000,000		
기타부채	8,692,235		
부채총계	31,808,692,235		
원본	569,725,494,239		
수익조정금	4,226,098,005		
이익잉여금	7,927,911,519		
자본총계	581,879,503,763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1기 (2024.04.22 ~ 2024.10.22)		
운용수익	8,478,992,398		
이자수익	8,388,451,132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90,541,266		
기타수익	82,269,623		
운용비용	-619,079,172		
관련회사 보수	0		
매매수수료	-619,079,172		
기타비용	-14,271,330		
당기순이익	7,927,911,519		
매매회전율	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00	0.00	0.00	0.00	0.0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2,050,236.75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2,050,236.75	0.00	0.00	0.00	0.00	0.00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한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05

(주1)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 적용(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1기(2024.10.22)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4,604,717,53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604,717,534					
2. 예치금	0					
3. 증거금	0					
대출채권		176,099,338,873				
1. 콜론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5,800,000,000					
3. 매입어음	170,299,338,873					
4. 대출금	0					
유가증권		419,054,823,169				
1. 지분증권	0					
2. 채무증권	419,054,823,169					
3. 수익증권	0					
4. 기타유가증권	0					
파생상품		0				
1. 파생상품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1. 건물	0					
2. 토지	0					
3. 농산물	0					
4. 축산물	0					
기타운용자산		0				
1. 임차권	0					
2. 전세권	0					
기 타 자 산		3,929,316,42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2. 정산미수금	0					
3. 미수이자	3,928,752,313					
4. 미수배당금	0					
5. 기타미수입금	564,109					
6. 기타자산	0					
7.수익증권청약금	0					
자 산 총 계		613,688,195,998				
부 채						
운 용 부 채		31,800,000,000				
1. 파생상품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31,800,000,000					
3. 기타운용부채	0					
기 타 부 채		8,692,235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2. 정산미지급금	0					
3. 해지미지급금	0					
4. 수수료미지급금	8,692,235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6. 기타미지급금	0					
부 채 총 계		31,808,692,235				
자 본						
1. 원 본	569,725,494,23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4,226,098,005					
3. 이월잉여금	7,927,911,519					
(발행좌수 당기: 569,725,494,239 좌	이익잉여금	7,927,911,519				
전기: 0 좌	수익조정금	0				
전전기: 0 좌)						
(기준가격 당기: 0.00 원						
전기: 0.00 원						
전전기: 0.00 원)						
자 본 총 계		581,879,503,76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13,688,195,998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1기(2024.04.22 ~ 2024.10.22)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8,470,720,755				
1. 이 자 수 익	8,388,451,132					
2. 배당금수익	0					
3. 수수료수익	82,269,623					
4. 기타투자수익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62,191,609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133,128,034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129,063,575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7. 기타차익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71,650,343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71,636,628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13,715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7. 기타차손	0					
운 용 비 용		633,350,502				
1. 운용수수료	0					
2. 판매수수료	0					
3. 수탁수수료	0					
4. 사무수탁수수료	0					
5. 지급수수료	633,350,502					
6. 기타비용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927,911,519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				

2. 연도별 설정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14,304.02	14,484.08	9,205.86	9,357.73	5,098.16	5,229.8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종류형펀드

ClassA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129.14	130.50	34.33	34.75	94.81	96.92

ClassA2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75.44	75.99	0.05	0.05	75.39	76.92

Class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50.24	50.87	20.02	20.34	30.22	30.90

Class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5,560.26	5,613.37	3,385.00	3,426.30	2,175.26	2,220.97

Class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819.81	828.20	500.65	507.25	319.16	326.15

ClassC-F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3,663.12	3,702.00	1,487.13	1,510.06	2,175.99	2,230.66

ClassC-I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783.40	788.83	583.40	591.99	200.00	205.00

Class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0.41	0.41	0.39	0.39	0.02	0.02

ClassC-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10.26	10.31	0.00	0.00	10.26	10.47

ClassC-P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31.42	31.72	1.77	1.79	29.65	30.26

ClassS-P(퇴직)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0.09	0.09	0.00	0.00	0.09	0.09

ClassC-P1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1.73	1.75	1.40	1.43	0.33	0.34

ClassS-P [단위: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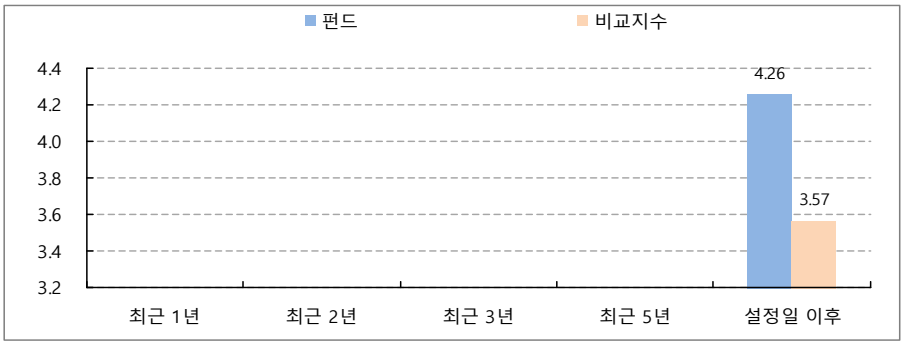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04.22 ~ 2024.11.30	0.00	0.00	0.04	0.04	0.04	0.04	0.00	0.0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

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04.22~ 2024.11.30
펀드	2024.04.22					4.26
비교지수						3.57
ClassA1	2024.05.08					3.94
비교지수						3.56
ClassA2	2024.05.20					3.84
비교지수						3.56
ClassA-e	2024.05.08					4.00
비교지수						3.56
ClassC	2024.05.08					3.74
비교지수						3.56
ClassC-e	2024.05.08					3.89
비교지수						3.56
ClassC-F	2024.04.22					4.14
비교지수						3.57
ClassC-I	2024.04.22					4.12
비교지수						3.57
ClassS	2024.06.20					3.97
비교지수						3.54
ClassC-P	2024.05.20					3.84
비교지수						3.56
ClassC-Pe	2024.05.23					3.92
비교지수						3.56
ClassS-P(퇴직)	2024.06.21					3.95
비교지수						3.54
ClassC-P1e	2024.05.08					3.98
비교지수						3.56
ClassS-P	2024.06.20					3.96
비교지수						3.54
수익률 변동성						0.09

주1) 비교지수 : Call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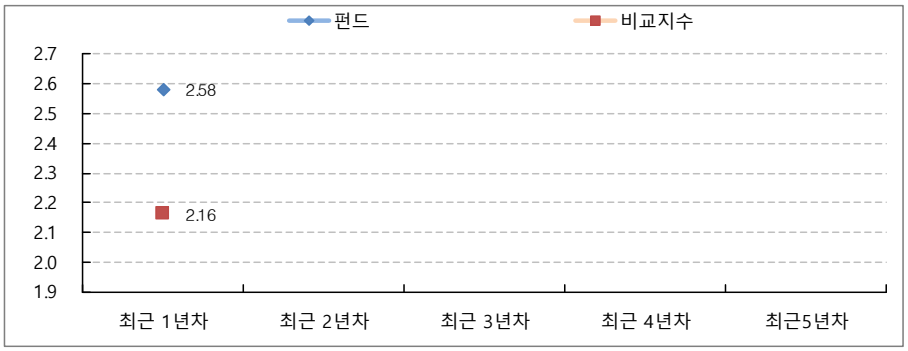
주3)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주6)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3.12.01~ 2024.11.30				
펀드	2024.04.22	2.58				
비교지수		2.16				
ClassA1	2024.05.08	2.22				
비교지수		2.00				
ClassA2	2024.05.20	2.03				
비교지수		1.89				
ClassA-e	2024.05.08	2.25				
비교지수		2.00				
ClassC	2024.05.08	2.10				
비교지수		2.00				
ClassC-e	2024.05.08	2.19				
비교지수		2.00				
ClassC-F	2024.04.22	2.51				
비교지수		2.16				
ClassC-I	2024.04.22	2.50				
비교지수		2.16				
ClassS	2024.06.20					
비교지수						

ClassC-P	2024.05.20	2.03				
비교지수		1.89				
ClassC-Pe	2024.05.23	2.04				
비교지수		1.86				
ClassS-P(퇴직)	2024.06.21					
비교지수						
ClassC-P1e	2024.05.08	2.24				
비교지수		2.00				
ClassS-P	2024.06.20					
비교지수						

주1) 비교지수 : Call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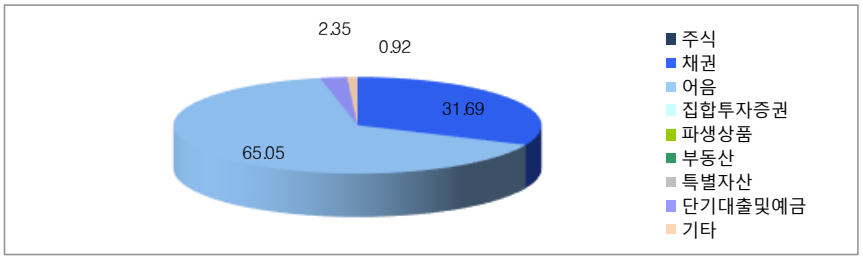
주3)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로,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으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현황



[2024.10.2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2,002.1	4,109.8	0.0	0.0	0.0	0.0	0.0	0.0	148.4	58.0	6,318.3
	(0.00)	(31.69)	(65.05)	(0.00)	(0.00)	(0.00)	(0.00)	(0.00)	(0.00)	(2.35)	(0.92)	(100.00)
KRW	0.0	2,002.1	4,109.8	0.0	0.0	0.0	0.0	0.0	0.0	148.4	58.0	6,318.3
	(0.00)	(31.69)	(65.05)	(0.00)	(0.00)	(0.00)	(0.00)	(0.00)	(0.00)	(2.35)	(0.92)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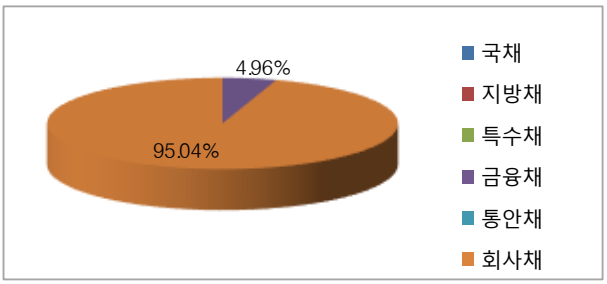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현황

[2024.10.21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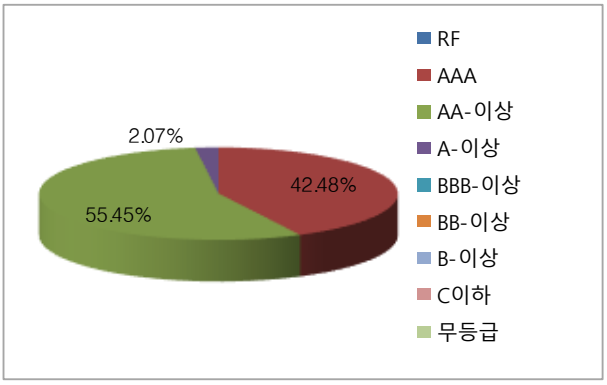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중
국채	-	0.00%
지방채	-	0.00%
특수채	-	0.00%
금융채	99	4.96%
통안채	-	0.00%
회사채	1,903	95.04%
합계	2,002	100.00%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2024.10.2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비중
RF	-	0.00%
AAA	851	42.48%
AA-이상	1,110	55.45%
A-이상	42	2.07%
BBB-이상	-	0.00%
BB-이상	-	0.00%
B-이상	-	0.00%
C이하	-	0.00%
무등급	-	0.00%
합계	2,002	100.00%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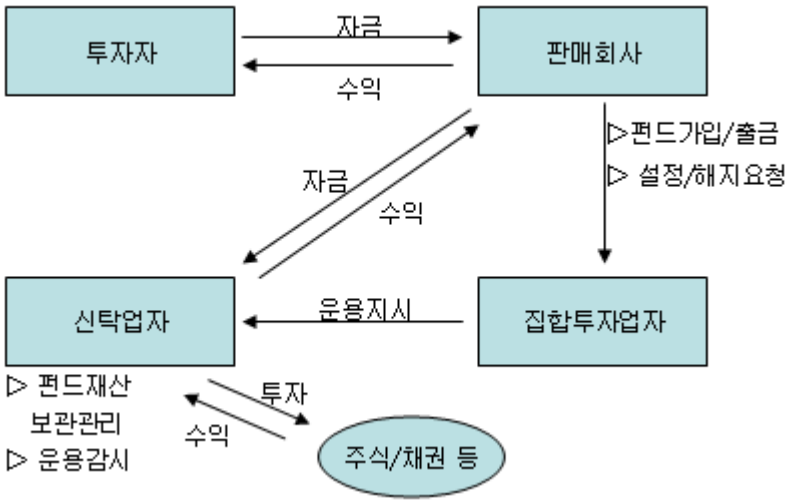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44층 (02-2118-0500 www.wooriam.kr)
회사연혁	2000. 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영업개시 2000. 9.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9. 1. 관리자산 8.9조원 2010. 4. 사명변경 (구)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2019. 8. 사명변경 (구)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2021.1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2024. 1.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자본금	23,985,770,000원
주요주주	우리금융지주 100%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우리펀드서비스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3.12.31	22.12.31	항목	23.12.31	22.12.31
유동 자산	620.2	398.9	영업수익	294.1	275.9
고정 자산	773.3	904.3	영업비용	247.8	213.7
자산 총계	**1,393.5**	**1,303.2**	**영업이익**	**46.3**	**62.2**
유동 부채	102.3	77.3	영업외수익	39.3	0.9
고정 부채		-	영업외비용	0.2	48.7
부채 총계	**102.3**	**77.3**	세전순이익	85.4	14.4
자본금	200	200	법인세비용	18.5	4.6
자본잉여금	121.1	121.1			
이익잉여금	965.4	898.5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	4.7	6.3			
자본총계	**1,291.2**	**1,225.9**	**당기순이익**	**66.9**	**9.8**

라. 운용자산 규모

[2024.11.3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8,246	112,082	2,866	8,936	4,275	20,275	19,856	1,601	156,520	334,65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연락처 T. 3770-8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sfc.co.kr)
회사연혁 등	1955. 10 회사 설립

	2004. 6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업무 개시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 길 17 (연락처 : 02-3151-3500)

회사연혁 등	2000.08. ㈜리젠코리아 인수 영업개시(신탁사업본부) 2000.11. 신탁사업본부 산하 증권수탁팀으로 흡수 2004.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해상충행위 방지규정으로 업무지원본부 총무부로 조직개편 2007.02. 우리 CS 자산운용㈜의 업무대리인 계약 2007.12. 조직개편으로 기업영업전략부로 소속 변경 200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탁사업단으로 소속변경
홈페이지참조	www.woori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 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KIS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T. 02-3215-1400	www.bond.co.kr
한국자산평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T. 02-2251-1300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T. 02-398-3966	www.nicepni.com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T. 02-721-5300	www.fnpricing.com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 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

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신탁계약서 제37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에 동의한 경우

※ 상기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대상금액 : 신탁계약서 제37조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의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2. 대상기간 :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다만, 변경시행일로부터 잔여 신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

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합니다)의 사항
2.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

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③ 또는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ESG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wooriam.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증권금융	관계수탁회사	중개거래	REPO	12,600

※ 상기 중개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해당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구분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	-평가항목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거래 유형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및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선정방법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로 조사분석서비스 및 매매체결 업무에 대해 최소 매 분기마다 평가하며,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각 중개회사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운용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매매담당자는 이 기준에 따라 약정을 배분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거래종목에 따라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우리자산운용
투자목적	책임성 제고 및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공유장치 마련
투자승인일자	2024.04.05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회수계획	-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에 회수 가능합니다. -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투자금 회수 시에는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1) 투자기간 이전에 불가피하게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②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 투자기간 의무를 승계(이전받는 자산운용사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펀드 투자를 유지)
③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 고 : 펀드용어 정리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관리/보관하는 회사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증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